2012년 4월 제28호
ISSN 1976-6041(On-Line)

치안정책리뷰

POLICE SCIENCE INSTITUTE REVIEW

발행인 한광일 **편집인** 조요셉 **전화** (031)285-0183 **FAX** (031)620-2989

권 두 언

멋있고 보람찬 경찰에로의 꿈 ..... 이인영 백석대학교 교수

연구특집

경찰서비스 고객만족 왜 해야 하나? ..... 치안정책연구소 백병성 연구관
경찰 복지정책의 발전방향과 추진전략 ..... 치안정책연구소 이상수 연구관
한국 금융범죄의 실태와 경찰의 대응방향 ..... 치안정책연구소 정 웅 연구관

치안정책동향

위치정보와 경찰활동 ..... 치안정책연구소 김현숙 연구관

치안현장탐구

검찰사건 피의자 호송인치에 관하여 .....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협의조정2계장
이정철 경정

입법 · 판례동향

2012. 3.~4. 국내외 입법 및 판례 소개

연구소 소식 및 소개

치안정책연구소
POLICE SCIENCE INSTITUTE

■ 권두언

멋있고 보람찬 경찰에로의 꿈

백석대학교 법정경찰학부 교수 이 인 영

경찰학과를 지원한 수험생에게 물어본다. 왜 경찰이 되길 원하는지? “어릴 적에 자신을 친절하게 도와 준 경찰관의 이미지가 좋아서 그 때부터 경찰관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가졌다”라는 답이 주어졌다. 다른 학생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였더니 “경찰이란 직업이 멋있게 보여서”라고 답하였다.

그 멋이라는 것이 제복 입은 모습을 말하는지, 직종이 풍기는 힘을 뜻하는지, 경찰을 소재로 한 여러 영화들에서의 주인공 이미지를 동경한 것인지 알 수는 없다.

경찰(警察)이란 명칭의 한자 의미는 말 그대로 “말투를 공손히 하여(警) 살핀다(察)”로 알고 있다. 민심을 살피며 겸손히 도와주거나, 피의자나 범죄 피해자의 상황을 차분히 살피면서 주어진 힘을 적정하게 행사하는 경찰이라면 역시 멋있게 보이는 경찰이라 하겠다.

경찰본연의 임무인 국민의 생명 · 신체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며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힘쓰는 경찰이라면 정말 멋진 ‘민중의 지팡이’가 되고도 남으리라. 지팡이란 원래 등산갈 때나 노약자의 보행 시에 걸음을 보조하는 버팀목 내지 길잡이가 되어주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이따끔 보게 된다. 경찰관의 이웃집 소녀 성추행, 각종 수뢰 독직(瀆職), 보험금을 노린(?) 경찰간부의 (존속)상해치사, 피해여성의 112 신고를 받고도 늑장 대처하고 허위보고한 사건(수원 부녀자 납치 살해 사건), 룸살롱의 황제로부터 상납받는 경찰관, 음주운전 하는 경찰관, 여자화장실에서 몰카 찍은 현직 경찰, 경찰간부가 딸 결혼식 청첩장 보내려고 경찰 전산조회를 통해 수천 명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례, 아파트 15층에서 추락 당시 생존한 여성을 사망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방치한 사례 등등. 근래 길지도 않은 기간에 이런 일련의 기사들을 자주 접하면 국민들의 마음이 편치 못하다.

이 모든 케이스가 언론에서 꽤 자주 접하게 되는 불편한 진실이다. 왜 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을까? 회복과 개선을 위한 시스템이 없거나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

물론 경찰인원 총 10만 여 명 중 극히 소수가 벌이는 소위 일어탁수(一魚濁水)라고 여기고 싶다.

그런데 흐려진 물이 다시 깨끗해지기도 전에 혼탁하게 하는 ‘한 마리 고기’가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점이 문제다. 그러니까 국민이 보기엔 경찰조직의 물이 항상 흐린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묵묵히 주어진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고 있는 대다수 구성원들을 허탈하게 하고 많은 국민들을 안타깝게 하는 부분이다.

국민에게 힘을 과시하는 조직이 아니라 국민이 부여한 힘, 즉 공권력을 국민을 위해 적재적소에 적정히 사용하여 국민을 보호하고 범죄 및 질서위반행위를 예방·진압하면서 사회질서

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의 민생까지 '살펴서' 그야말로 국민을 '섬기는' 경찰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원동력은 끊임없는 자성과 변화를 향한 각오와 맡은 바 직무에 대한 깊은 책임감에서 출발해야 한다. 구성원 각자가 도덕성으로 재무장하여야 하고, '나 하나만이라도' 국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나 하나쯤이야' 식의 일어(一魚)적 발상으로 말미암아 자의적인 경찰권 행사 또는 권한 남용이나 심지어 위법 사례까지 있게 되면 경찰조직 전체가 국민의 지지를 얻기 힘들다.

국민은 그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경찰관 한 명을 통해 전체를 보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한 사람의 성실한 봉사는 경찰 조직 전체의 이미지 쇄신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순경에서 장관까지 오른 전직 경찰고위간부는 수기에서 경찰의 멸사봉공(滅私奉公)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소망하면서 "순경이란 계급은 경찰의 말단이지만 한 개인의 사사로운 권력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하였다)...순경 한 사람이 주민을 아끼고 위하니 주민들도 경찰을 가족처럼 생각해주는 것을 보고 '순경 한 명이 주민들의 국가관을 좌우할 수도 있겠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고 토로하고 있다.

경찰 조직에 힘이 있을수록 경찰은 더욱 낮은 자세로 직무에 충실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그 힘은 공권력에 도전하거나 흉집 내는 범법자들에게는 단호하게 사용되어야 하지만, 권한을 위임한 국민에게는 함부로 부당하게 행사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역경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며 직무에 충실 하는 경찰, 친절하고도 겸손한 직무 수행과 청렴하고도 투명한 직무 처리에 자부심을 갖는 대다수의 경찰을 국민은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경찰은 안으로는 상경하애 하면서 밖으로는 기강이 확립되어야 한다. 이 상경하애 풍토는 단지 위계(位階)에 의한 상하관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에 입각한 자연스런 인간애와 존중이 내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열심히 일하는 하급자를 존중할 줄 아는 분위기가 자리 잡아가야 한다. 이제는 지시일변도의 경직된 수직적 시스템으로는 더 이상 국민들의 치안수요를 온전히 충족할 수가 없다.

각자 맡은 바 일을 능동적으로 행하려는 섬김의 자세와 시대변화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소통이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국민이 주권자이고 경찰공무원은 국정의 선량한 관리자, 공무의 적정한 수행자,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므로 국민이 맡긴 힘을 공정하고도 깨끗하게 행사하며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에 성실히 임한다는 올바른 공직관이 확립되어야 한다.

국민들의 경찰 수요와 민원(民願)이 있음에도 무사안일(無事安逸)하게도 '움직이지 않는' 경찰이라면 이 또한 경찰불신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때때로 지상(紙上)에 거론되는 각종 늑장대처 사례가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

물론 오늘날처럼 사회 현상이 복잡다단한 시절에 천태만상의 치안 수요를 획일화한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할 수가 없고, 또한 경찰 내·외부의 지나친 사정체계는 자칫 조직의 경직을 가져와서 신속하고도 자율적이며 능동적인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도 주지하여야 할 것이다.

잘못 처리한 직무에 책임을 지는 풍토도 물론 중요하지만, 큰 일이 터질 때마다 수장(首長)이 물러나는 일을 반복하기 보다는 우선 경찰구성원들이 신명나게 소신껏 일할 수 있고 사기와 긍지가 진작되는 근무 풍토 조성에 꾸준히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구조적인 부조리가 상존하지 않도록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공정한 인사와 수사 등과 함께 제도 및 처우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개혁함으로써 글로벌 선진 경찰이 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현직 경찰로 근무 중인 졸업생들에게 물어본다. "어느 때 경찰이 된 보람을 갖느냐?"라고. "맡은 바 업무를 규정대로 소신껏 처리했을 때, 어려운 민원을 해결했을 때, 치매노인 집 찾아주기 등 대민 봉사를 할 때 보람을 느낀다."라는 대답들이 주어졌다.

초등학교 시절 열심히 도둑잡고 주민을 알뜰살뜰 살피는 이웃집의 그 좋은 경찰관 아저씨에 대한 선망의 이미지가 나중에 커서 경찰관이 되어야겠다는 꿈으로 자리 잡게 되고 급기야 경찰 본연의 책무에 충실한 경찰관이 되어 이 사회를, 이 대한민국을 밝게 비추고 지지하면서 그야말로 멋지고 보람찬 경찰관이 되었다는 인식을 안팎으로 심어가게 된 것이리라.

머지않아 모든 경찰이 국민을 위해 일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한국경찰이 되리라 기대한다. 물론 지금도 많은 경찰들이 묵묵히 주어진 일에 충실하면서 국민의 사랑을 받으며 보람을 느끼고 있으리라 믿는다. PSI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로서 치안정책연구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치안정책리뷰는 치안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www.psi.go.kr).

치안정책리뷰 편집팀

편집팀장 : 김현숙 연구관

편집위원 : 권태형, 신동욱, 이춘삼, 정웅 연구관

치안정책리뷰 편집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로 74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446-703)

- 전화: 031-620-2804 (경비) 61-2804
- e-mail: webmaster@psi.go.kr

치안정책리뷰를 보신 후 편집실 앞으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추첨하여 소정의 사은품을 드리며, 치안정책연구소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보내실 내용**

- 이름, 근무지, 연락처, 이번 호에서 좋았던 기사
- 치안정책리뷰에서 다루기 원하는 내용
- 기타 치안정책리뷰 발간에 관련된 의견

□ **보내실 곳**

- 인터넷 : webmaster@psi.go.kr
- 내부망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김현숙

■ 책임연구과제 요약

경찰서비스 고객만족 왜 해야 하나?

백 병 성 선임연구관
치안정책연구소 정책기획연구실

현재 경찰의 고객만족 수준

"경찰서나 파출소가 물건 파는 곳도 아닌데, 시민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눈치를 살펴야 하나? 우리 경찰이 범인만 잘 잡으면 되지, 고객만족까지 해야 하나?" "본질적으로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교통범칙금 딱지를 발부하는 일을 하는 경찰이 고객만족 운운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우리의 고객(시민)은 절대 만족하기 어렵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 하시는 경찰관이 있다. 시민은 오히려 경찰과 맞대면을 하지 않거나 우연이라도 만나지 않는 게 행복이고 만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 상식이라는 경찰관도 있다.

물론 얼핏 들으면, 국민을 규제하고 자유를 제한하며, 법규를 위반하는 사람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을 하는 데, 어떤 국민이 좋아하고 그런 경찰관을 평가할 때 좋은 점수를 주겠느냐고 강변할지 모른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경찰청의 고객만족도 순위는 계속 바닥을 밑돌고 있다. 2011년 외부기관에서 실시한 경찰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국민권익위의 인터넷 민원만족도를 제외한 고객만족도는 매우 낮다. 국무총리실 조사결과 20개 기관 중 18위, 능률협회(KCIS) 조사결과 10개 기관 중 9위, 한국생산성본부 조사결과는 274개 업종 중 253위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성적은 우리 경찰관들이 평소 국민에게 보여준 모습의 결과이다. 물론 조사대상 20개 기관 중에는 기상청이나 중소기업청과 같이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업을 일방적으로 지원만을 하는 기관도 있다. 이들 기관은 업무의 성격상 국민에게 베푸는 사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높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결과는 꼭 그렇지도 않다.

역시 반대의 경우도 있다. 병무청과 국세청이 그 경우인데, 병무청은 혈기 왕성한 젊은이를 징집하여 2년씩이나 거의 무보수로 군복무를 강요(?)하는데도 고객만족도는 왜 최상위권인가?, 그 뿐 아니다. 국민이 힘들여 번 돈을 세금의 이름으로 강제로 납세토록 하고 지정된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탈세혐의로 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세청의 고객만족도는 어찌 높다는 말인가?

다행인 것은 경찰청의 고객만족 점수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몰론, 다른 기관과 비교했을 때, 그 순위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객만족도 점수가 조금씩이나마 개선되는 것은 경찰청 안에서 고객에 관한 의식이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1> 국무총리실 주관 경찰청의 고객만족도 점수 추이

연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민원행정 서비스만족도	56.3	59.5	62.83	68.14	72.8	75.4

경찰서비스에서 고객만족 필요성

현대사회는 투명한 정보사회이다.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 등 행정의 환경도 변화되고 있다.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사회구조도 과거 권위주의에서 수평적 네트워크구조로 변화되고 있다.

이제 국민은 정부의 활동 하나하나를 주시하고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국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지 못할 경우 정당성의 위기를 맞게 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환경변화에 따라 각 기관은 끊임없이 주민 또는 고객들의 수요와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그것이 공공행정부문에서도 고객만족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객만족이론은 원래 경영학의 마케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지만, 1990년대부터 효율적인 정부운영과 시민으로서의 권리 그리고 국민의 선택권 등에 기초하여 행정영역에서도 적극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는데, 수요자의 입장에서 행정서비스의 주민중심, 고객만족주의, 소비자 우선주의가 예이다.

현대 경찰서비스는 이원적 성격을 갖는다.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그리고 '시민만족을 위한 갈등해소 및 사회적 응원'이 그것이다.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 개인 활동의 자유를 일부 규제 또는 제한하는 차원의 소극적인 범죄예방·진압·수사활동이 전자이다. 이와 같은 규제의 대상은 매우 다양하고 발생 또한 갑작스럽게 이루어진다. 또 해결과정에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경찰관의 휴먼서비스, 긴급구조, 면허, 정보제공, 분쟁해결, 분실물서비스, 일반 안전서비스, 여성의 인권보호, 미아 실종자 찾기, 치안의 유지, 주민의 생활안전 등의 적극적인 보호를 임무로 하는 배분적 기능이 후자이다. 경찰의 일상적인 활동은 대부분의 주민과 시민을 도와주고 지원하는 기능이 훨씬 크다.

경찰행정은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그 정당성이 유지된다. 시민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어야 그 정치적 기반이 확보될 수 있고 경찰활동의 효과성도 달성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은 민주성과는 상충적인 요소가 일부 있어, 시민의 신뢰와 지지를 획득하고 경찰기관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과거 권위주의시대 산물인 규제와 단속에 익숙한 경찰조직은 패러다임의 변화에 익숙하지 않다. 즉, 일선 경찰관은 피치자(被治者)를 고객(顧客)으로 모시는 것은 쉽게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또 경찰과 같이 강력범죄에 대응하여야 하고 112신고 등 시간을 다투는 사건에 익숙한 업무특성상 경찰관이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경우 고객에 대한 관심과 주의는 떨어지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의 수장인 경찰청장은 고객을 위주로 한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고객만족에 많은 자원을 배분해야 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과거 정책에 대한 평가는 정책서비스의 제공자인 공직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과 과정이 법령을 준수하느냐가 기준이었다. 현재는 정책서비스의 대상자인 고객이 정책 서비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느냐로 변화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고객만족을 위해 공을 들여야 하는 이유는, 첫째, 국민은 경찰의 최고의 고객이면서 고마운 고용주이다. 고객만족은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이것이 경찰이 존재하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둘째, 경찰청의 고객만족수준은 국무총리실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다른 기관과 비교평가 되고 있고, 경찰청 자체 고객만족도 평가 결과는 경찰서와 경찰관 개인의 업무성과로 평가받고 있어 고객만족을 저버릴 수 없는 이유이다.

이제 고객만족은 일반 행정은 물론 치안과 국방에서까지 현대사회의 국가운영에 있어 큰 패러다임인 것이 분명하다. PSI

■ 책임연구과제 요약

경찰 복지정책의 발전방향과 추진전략

이 상 수 선임연구관
치안정책연구소 정책기획연구실

경찰 복지의 획기적 전환을 위한 토대 마련

작년 말 경찰은 창설 67주년 만에 획기적인 전기(轉機)를 맞이하는 일대 쾌보(快報)가 있었다. 바로 경찰의 오랜 숙원과제이자 염원(念願) 중 하나였던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이 2011년 12월 29일자로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많은 경찰공무원들이 동법 제정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그 의미와 향후 가져올 파급효과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지 못한 듯하다.

주지하다시피 복지기본법은 경찰관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골자를 보면 국가에 대하여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여건의 조성과 이를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책무를 부여하고, 5년마다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한편, 복지 현황 실태조사 및 조사결과의 기본계획 반영 등 경찰복지 향상을 위한 계획수립과 재원확보 등을 담고 있다.

따라서 경찰도 체계적인 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이제 시행령 제정과 6개월의 공포기간을 거쳐 올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현재 경찰청 복지정책과 주도로 법시행에 대비한 만반의 준비가 이루어질 것이라 보지만 향후 경찰복지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위한 초석을 놓는다는 의미에서 1차 5개년 복지증진 기본계획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본 글에서는 경찰복지정책이 나아갈 방향과 중장기 발전전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경찰 복지의 회고와 현황 진단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복지정책은 이 시대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국가의제(National Agenda)로 대두하고 있다. 현금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거대 담론도 복지 논쟁이다. 복지문제를 둘러 싼 이념과 논쟁이 대한민국의 화두로 떠오른 것이다. 보편적(차별없는) 복지와 선택적(선별적·맞춤형) 복지를 두고 학계와 정치권에서의 논쟁도 치열하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중 어느 쪽으로 복지정책의 기조와 기본방향을 설정할 것인지, 성장과 복지 간의 우선순위와 조화방안,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의 수준을 어디까지 획정할 것인지 등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을 두고 논의가 뜨겁다. 가히 복지정책은 이 시대 최고의 이슈로 부상하고 있고, 2012년 19대 총선 전후와 대선을 앞두고 그 논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경찰은 그간 뚜렷한 복지정책을 갖고 있지 못한 실정이었다. 아니 체계적인 경찰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내실있게 실천해 본 적도 기실 없다. 물론 그간 국가사회 발전과 병행하여 사회 전반의 복지체계 개선에 따라 경찰복지 역시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다.

특히, 보수체계와 근무환경 개선, 맞춤형 복지제도의 실시, 순직·공상 경찰관에 대한 특별부조금제도 실시 등 보상지급 체계 개선, 보수 및 수당체계의 현실화 및 계급 및 직급체계의 상향조정 등 처우개선 노력이 한창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인프라 및 여가복지 향상을 위해 전국 6개소에 걸친 경찰수련원 운영으로 휴양벨트를 구축하고 있고, 맞벌이 경찰

관들을 위한 직장 육아보육시설 도입, 전국 경찰관사의 운영 개선, 경찰병원 경영개선 추진, 퇴직예정 경찰관 공로연수제 도입 및 대우공무원제 적용 확대, 경찰 복지폰 도입, 직장 내 보육시설 확충 등 다각적인 경찰조직 내부구성원들을 위한 복지증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경찰관의 경찰 내 복리후생 분야에 대한 불만족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는 경찰 직무만족도 조사결과에서 증명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 단계 경찰복지는 기본 복지대책의 성과를 이어받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기존 경찰복지 정책의 수준과 외연(外延)을 보다 심화·확장시킬 시점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을 위한 복지정책 수립·추진은 경찰관의 직무만족도 향상과 치안서비스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라도 우선적으로 정비해야 할 정책우선순위를 갖는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경찰복지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구체적인 사업개발이 선결되어야 한다.

경찰 복지정책의 중장기 발전방향과 추진전략

1. 중·장기 발전전략의 기본방향

맞춤형 복지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경찰공무원들의 복리후생 이용에 대한 선택의 폭은 넓어졌으나, 아직까지 실제로 제도의 안정화와 구색을 맞추는데 급급할 뿐 공무원들의 복지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 따라서 경찰관들의 실질적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중장기 계획을 통해 치안업무 수행 환경과 개인의 욕구 변화에 맞춰 보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서비스로 제공을 확대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제도의 내실화를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경찰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을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과 삶의 균형있는 조화를 지향하는 경찰복지 정책으로의 방향전환이다.

둘째, 재직 근무 중 다양한 복지정책을 개선·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다. 구체적으로 근무환경의 개선과 공상(公傷)으로 인한 부상 및 사망시 처우개선 및 의료서비스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

셋째, 비번(非番)시 또는 휴가시 여가활동의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다. 요컨대, 맞춤형복지의 여가활용 부문 개선을 비롯해 전국 경찰수련원의 신설, 그리고 각종 서비스 이용시 할인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넷째, 경찰복지 관련 법제도 체계를 정비·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경찰복지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중장기적 시계(視界) 하에서 복지 증진을 위한 체계적 계획을 설계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령 제·개정, 관련 제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의 과감한 실천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다섯째, 복지예산의 지속적 증액을 위한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관심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여섯째, 경찰관의 전직(轉職)과 퇴직을 고려한 경찰복지체계 구축이다.

2. 경찰 복지정책의 목표와 추진전략

(1) 목표

경찰복지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재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일과 삶의 균형있는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경찰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 보장을 위한 복지이다. 이를 위해 직장 내 복지계획의 강화 및 실현, 여가활용에 대한 복지프로그램의 확대·강화, 내부 사기진작 및 직무몰입도 제고를 위한 복지 인프라 구축 등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둘째, 지속가능한 복지 구현이다. 복지는 다다익선(多多益善)이지만, 핵심은 재원이다. 재정적 뒷받침이 없는 복지정책은 포퓰리즘일 뿐이다. 복지는 재정적 뒷받침이 전제되어야만 지속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경찰 예산 중의 일

정비율을 복지관련 예산으로 편성하고 매년 조금씩 증액해 나가는 중장기적 대책 수립이 전제되어야 경찰복지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셋째, 가족친화적 복지 실천이다. 가족은 개인의 삶과 행위가 귀속되는 핵심 테두리이며, 사회가 지속되기 위한 기본 단위이다. 가족이 안정돼야 사회와 국가도 안정되고, 경찰관이 직무에 충실할 수 있다. 맞벌이 가정의 증가, 한 부모 가정의 증가, 여성경찰의 증가 등으로 그동안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던 돌봄, 양육, 교육은 국가의 책임이 되었고, 경찰조직 또한 다양화된 가족 형태에 따른 맞춤형 가족친화적 복지가 요구되고 있다.

(2) 추진전략

경찰복지 중장기 계획의 수립과 실천을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지향적이고 종합적이며 실천 가능한 경찰복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경찰복지정책 중장기 계획은 경찰의 치안역량 제고 및 경찰관 직무만족도 향상의 근간이 되는 경찰복지의 단계적 실천을 위한 제반 노력의 명확한 평가 근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미래지향적이고 종합적이며 실천 가능한 복지계획의 수립이 요구된다.

둘째, 최고 정책결정자 및 경찰 지휘부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최고지도자와 경찰 수뇌부의 확고한 경찰복지 향상 의지와 추진력은 경찰복지 수준 향상에 가장 강력한 성공요건의 하나로 작용하므로 적극적 관심과 독려, 그리고 복지예산의 지속적 증액을 연차적으로 실현해 나가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가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셋째, 경찰공무원의 임무수행에 있어서 '일과 삶의 조화로운 구현방안' 도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치안업무 수행에 있어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과 조화를 통해 경찰공무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조직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인프라 구축 및 복지체계 기반확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건강관리 지원시설의 설치와 전문적 운영지원, 인식제고, 조직문화의 개선을 통한 시설 이용의 활성화 추진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경찰 복무단계별 생애복지프로그램의 구축 및 실현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찰 복무단계별 복지의 실현은 입직·재직·퇴직 단계별로 구분할 때 크게 재직자 복지와 퇴직자 복지로 구분하여 재직자에 대한 처우개선 등 각종 복지정책의 강화와 퇴직자에 대한 일자리 지원 및 전직자 지원 등의 복지정책을 보다 확대·강화해 나가는 것이다.

3. 추진체계

경찰복지정책 추진체계는 경찰복지정책 추진체계 마련 및 경찰복지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추진, 민간부문과의 연계·협력 강화, 그리고 경찰복지정책의 지속적 이행 점검 평가체계 수립 등이 유기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관리·통제 측면이 강조되는 현재의 경무국 명칭을 인적자원의 효과적 관리와 지원·보조기능을 강조하는 '인사복지국'으로 개칭하고 제반 부서개편과 기능확충을 통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종합적인 경찰복지정책을 수립·집행하는 종합 기구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경찰 복지정책의 영역과 분야

1. 경찰 복지정책의 영역

경찰복지가 포괄하는 영역은 매우 넓다. 그러나 경찰복지정책이 다루어야 하는 영역은 현실적 여건상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경찰복지 중장기 기본계획에서 다루어야 하는 영역을 다음 몇 가지로 구분하고, 이들 영역에 대한 정책수립 및 시행의 필요성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직장 내 복지계획의 강화 및 실현이다. 경찰 업무 수행 과정에서 근무환경의 개선을 위한 복지프로그램을 확대·강화하는 것은 치안

경쟁력 제고와 경찰관 직무만족도 제고, 그리고 경찰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제고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여가활용에 대한 복지프로그램을 확대·강화하는 것도 일과 여가의 균형있는 조화를 통해 업무 생산성 제고 차원에서 경찰복지정책이 핵심적으로 주목해야 할 영역임과 동시에 경찰복지서비스가 중점적으로 제공되는 영역이어야 한다.

셋째, 경찰 내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의 실현이다. 부족한 복지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복지프로그램 대상집단을 선정하여 선별적 복지정책 시행할 필요가 있다. 즉, 복지정책 대상 목표집단(Target Group)을 경찰인력 구성에서 94.5%를 차지하고 있는 경위 이하 중하위직 경찰관 복지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복지 기회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

넷째, 경찰 복무단계별 맞춤형 복지의 실현이다. 입직·재직·퇴직 단계별로 구분할 때 크게 재직자 복지와 퇴직자 복지를 구분하여 퇴직자에 대한 복지정책을 보다 확대·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2. 경찰 복지정책의 분야별 과제

위와 같은 기준에 의거하여 경찰복지의 영역을 크게 경찰 복무단계별 생애복지의 구축 및 실현 차원에서 경찰 복지인프라 구축영역, 재직자 복지강화 영역, 그리고 퇴직자 복지강화 영역의 3개 분야로 복지정책의 주요 방향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 첫째, 경찰 복지인프라 구축 영역은 경찰복지계획 수립과 관련 법제도 기반 구축과 복지예산 확보 등의 복지정책 마련을 위한 청사진과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를 정비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경찰복지 관련 법제도 체계 정비 분야, 중장기 복지 기본계획 구축·운영 분야, 복지예산 확충 분야로 구성할 수 있다.

둘째는 재직 경찰관의 직장 내 복지계획의 강화 및 실현 영역이다. 구체적으로 보수분야, 계급·직급체계 분야, 내부 사기진작 및 직무몰입도 제고 복지 개선 분야, 근무환경 개선 분야, 건강 및 의료서비스 분야, 순직·공상 지원분야, 휴양 및 여가지원분야, 맞춤형복지 개선분야, 가족복지분야, 그리고 경찰공제회 복지서비스 확충 및 경영 개선 분야 등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퇴직자 복지 강화 영역이다. 여기에는 퇴직경찰관의 전직·퇴직시 지원과 재취업 일자리 연계·창출 등을 중심으로 복지분야를 구성하였다. 요컨대, 퇴직후의 재취업 활성화 분야, 공로연수제 활성화 분야, 전직(轉職)·퇴직교육 강화 분야 등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결 어

이상 논의한 경찰복지가 법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실천 가능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장기적 시계(視界) 하에서 경찰복지 정책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은 경찰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업무성과 향상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치안경쟁력 제고로 확산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상을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제 '복지는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현재 시점의 투자'인 동시에 경찰관의 직무만족도 제고와 직무몰입도 향상에 있어서도 핵심적 결정요인이란 인식의 전환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경찰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경찰예산 중 일정비율을 복지관련 예산으로 편성하고 매년 단계적으로 증액해 나가도록 한다. 경찰복지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토대로 복지예산의 지속적 확충을 위해서도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관심과 노력이 수반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PSI

■ 책임연구과제 요약

한국 금융범죄의 실태와 경찰의 대응방향

정 웅 연구관
치안정책연구소 범죄수사연구실

머리말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개발금융체제에 뒷받침된 고도경제성장의 실현과 함께 금융시장 자율화 및 대외개방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외환위기를 거치면서도 금융시장 인프라 정비, 금융상품과 시장의 다양화, 거래기법의 발전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국내 금융시장이 1980년대 이후 지난 30년간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즉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그 규모면에서만 보더라도 2009년 6월말 현재 자금시장과 자본시장을 합한 금융시장규모가 총 2천 31조원에 달함으로써 1980년 6.6조원의 약 308배에 달하고 있다(<표 1>).

<표 1> 한국 금융시장의 규모(기말잔액 기준)

단위 : 조원, 배

	1980(A)	1990	2000	2005	2009.6(B)	B/A
자금시장[1]	1.5	44.3	138.8	212.7	328.2	218.8
자본시장	5.1	114.0	614.2	1,416.8	1,702.7	333.9
채 권[2]	2.5	35.0	397.1	690.9	910.0	364.0
주 식[3]	2.5	79.0	217.1	726.0	792.7	317.1
전 체(C)	6.6	158.3	753.0	1,629.6	2,030.9	307.7

자료: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2009.

이처럼 금융시장이 확대되고 금융거래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나가는 반면에, 금융시장 자율화 및 개방화 조치에 따라 자유로워진 금융거래와 금융제도에 수반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을 저해하는 각종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는 비단 국내외 투기적 거래에 의한 금융시장 자체의 변동성(volatility) 위험뿐만 아니라, 특히 불법적 수익을 겨냥한 각종 불법금융거래(illegal financial transaction) 위험성 역시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금융감독 당국에서는 금융시장 자율화 및 개방화 조치와 병행하여 적정한 금융감독제도의 운용으로 금융사범의 양산을 방지해야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청을 비롯한 단속·수사기관에서도 건전한 금융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금융범죄를 분석하고 차단함으로써 탈법위험을 최소화해야할 필요가 있다.

금융범죄의 실태

금융범죄의 유형 중 제1금융권인 은행기관에서의 범죄 동향을 보면, 2000년대 전반과는 달리 최근에는 거액의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여 은행의 금융사고 예방기능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감독당국 및 은행의 지속적인 사고예방 노력으로 은행권 사고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2009년의 경우를 보면 사고규모가 대형화하고 신종유형 사고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사고건수 및 건당 평균 사고금액이 지난 2000년 224건, 3.0억원에서 최근 2009년 48건, 66.3억원으로 증가하였다.

또 이러한 은행권의 대형·신종 금융사고는 과도한 실적추구과정에서 내부직원에 의하여 위변조 수법으로 이루어지는 특징을 반복적으로 보이고 있다(금융감독원, 2010.9).

서민금융범죄는 일반은행을 통한 서민금융보다는 주로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non-bank depository institution)의 서민금융, 신용카드와 할부금융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그리고 대부업 등 사금융에서의 서민금융과 관련된 범죄이다.

서민금융은 기업금융, 증권투자, 보험 등 여타 금융권역에서의 자금융통과 달리 서민들의 기초생활자금수요와 직접 관련되며, 서민금융범죄는 이러한 서민들의 기본적 금융자산을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전형적인 민생침해 범죄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무등록대부업, 불법채권추심행위, 불법유사수신행위 등 불법사금융이 서민들의 생활고를 가중시켜온 바, 경찰에서는 서민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최근까지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06년 1,123건 3,219명 수준이던 불법사금융사범은 2008년에 5,635건 11,095명으로 증가하더니,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신용경색과 그에 따른 글로벌 금융위기(global financial crisis)를 겪은 다음해인 2009년에는 17,230건 25,664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3배, 2.3배 이상 폭증하였고 3년 전에 비해서는 검거건수 약 15.3배, 인원은 7.9배가 늘어나는 등 지속적 증가추세를 보였다. 경찰의 지속적 대응 노력 속에 2010년 불법사금융사범은 3,028건 6,268명으로 대폭 감소하였으나(<그림 1>), 2011년 들어서는 11월까지 4,207건 8,392명이 검거되어 전년 동기 2,693건 5,676명에 비하여 검거건수와 인원이 다시 각각 56.2%, 47.9%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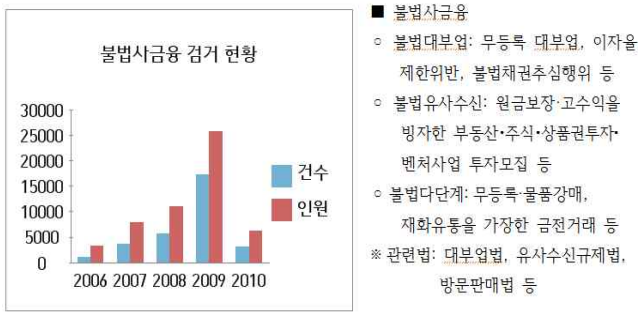

<그림 1> 불법사금융 검거현황(2006-2010)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그에 따른 고용난, 물가상승과 급증하는 가계 빚, 소비 여력 감소 등의 여건 하에 서민계층은 상대적으로 접근이 수월한 서민금융기관 이용과정에서 금융범죄에 노출될 가능성(exposure to financial crime risk)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상위계층보다 경기불황과 실질소득감소의 영향을 크게 받는 서민계층은 경기호전과 풍부한 유동성 여건 하에 발생하기 쉬운 고수익 빙자 유사수신 보다는, 불황기 긴박한 기초생활자금 수요로 인해 여신업(loan business) 사이드에서의 범죄피해 위험, 또는 취업과 영업수익을 빙자한 불법다단계에서의 범죄피해 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불법사금융 외에도 최근 농·수협 단위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의 금융사고가 지속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표 2> 상호금융기관 금융사고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 분	2008	2009	2010	계
사고건수	59	59	52	170
사고금액	189	174	202	565

자료: 금융감독원(2011. 3. 23).

특히 2010년에는 사고건수가 52건으로 줄었음에도 금액은 오히려 202억원으로 증가하여 금융사고가 일반 은행기관에서와 같이 대형화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표 2>).

보험범죄의 실태를 보면 2007년 이후 최근까지 적발금액과 적발인원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0년도에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467억원(적발인원 54,994명)으로 전년대비 금액기준 4.9%(162억원), 인원기준 1.3%(726명) 증가하였다(<표 3>).

이중에서 보험범죄신고센터의 제보 및 보험사의 사기혐의 보고를 통해 금융감독원과 수사기관이 공조하여 적발한 금액은 741억원(12,676명),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이미 수령한 보험금을 자진반납한 금액은 2,726억원(42,318명)으로 나타났다.

<표 3> 보험사기 적발실적 (단위: 백만원, 명, %)

구 분		'07년	'08년	'09년(a)	'10년(b)	증감율(b/a)
적발금액	생 보	39,335	36,946	47,581	59,136	24.3
	손 보	165,189	217,925	282,874	287,583	1.7
	계	204,524	254,872	330,455	346,719	4.9
적발인원	생 보	2,309	1,694	2,639	3,357	27.2
	손 보	28,613	39,325	51,629	51,637	-
	계	30,922	41,019	54,268	54,994	1.3

자료: 금융감독원(2011. 4. 7).

한편 이 같은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총 보험범죄 규모 중 10% 정도인 것으로 추정하면, 2010년의 경우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규모는 약 3조 5천억 수준으로 추산된다.

대응 방향

금융범죄는 합리적 경제계산을 기초로 범죄행동이 이루어지는 극히 지능적 범죄유형에 속한다. 금융범죄는 일반적으로 범죄행위로부터 기대되는 수입(Y)의 증가함수이며, 기대처벌비용 즉 처벌가능성(P) 및 처벌강도(severity)의 감소함수이다. 이중에서 Y 즉 금융범죄로부터의 기대수입은 한국금융시장의 성장에 따라 급속히 증가하여 왔다. 따라서 증가하는 금융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대수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기대비용을 확보해나갈 필요가 있다.

기대처벌비용은 법규(형량) 강화와 같은 처벌강도의 제고, 또는 형사사법당국의 법집행 강화에 의한 처벌확률 제고를 통해 구체화되는 것이지만, 특히 금융범죄에서 위험선호적 범죄자(risk-lover)의 경우 형량의 증가보다는 처벌확률의 증가에 의한 범죄감소의 탄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체포와 처벌가능성을 높여주는 경찰의 수사역량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 PSI

사례 2 불법다단계 조직을 운영한 피의자 13명 검거 (10. 5 / 대구·금융범죄수사팀)

○ 피의자는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 '10. 1. 29경 대구 소재 빌딩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본사 및 서울 등 8개 지사 사무실에서 "상품을 구입하면 정식 다단계 판매원이 될 수 있고, 하위 판매원 모집실적에 따라 추가로 직급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기망하여,
○ '10. 3. 4 ~ 8. 19까지 총 4,000여명으로부터 4,104회에 걸쳐 총 34억원 가량을 교부받아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

사례 1 20억원대 불법 대부업자, 조직폭력배 등 12명 검거 (9. 14 / 경북 광수대)

○ 피의자들은 대부업자(무등록) 및 채권추심의뢰를 받은 조직폭력배 등으로,
○ '07. 6. 1 ~ '10. 8. 20까지 피해자 328명에게 연 63% ~ 305%의 고율의 이자를 받는 등 약 2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불법 대부업),
○ '09. 11월 초순 경 채권추심을 의뢰 받아 채무자의 공사현장을 수차례 찾아가 폭력배임을 과시하며 1,100만원을 교부 받음.
○ 또한 '10. 8월에는 매일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 불법으로 채권 추심

사례 3 북한이탈주민 상대 유사수신 피의자 11명 검거 (10. 28 / 경기·금융범죄수사팀)

○ 피의자 11명은 안양시 소재 빌딩에 불법유사수신업체 사무실을 차려놓고,
○ '10. 1월부터 8월경까지 북한이탈주민인 피해자에게 리니지II 게임 사업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출자금 명목으로 금 1,300만원을 받는 등,
○ 불특정 다수인 391명으로부터 리니지II게임 및 오리농장 사업 출자금 명목으로 41억원 상당을 유사수신

■ 연구논문

위치정보와 경찰활동

김 현 숙 선임연구관
치안정책연구소 수사구조개혁연구실

들어가며

이동통신 및 정보기술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상거래, 보안 등의 분야에서 IT산업과 융합되어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 대표주자로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를 이용한 위치정보이용, WCDMA(Wideband CDMA) 모듈을 이용해 TCP/IP로 차량의 위치를 웹서버에 실시간 전송하는 서비스, 블루투스와 스마트폰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한 실시간 위치서비스(주로 차량), 차량에 부착하는 RFID를 통한 위치정보 제공 등을 들 수 있다.

최근에는 단순히 몇 미터 반경 내에 당사자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정도의 위치정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Wi-Fi에 기반하여 실내에서도 구체적으로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진행중이어서 미국 드라마나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기술이 조만간 구현될 수 있을 전망이다.

위치정보서비스 중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GPS는 1970년대 초 미국 국방부에서 위성항법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구상에 있는 물체를 측정하기 위하여 만든 군사 목적의 시스템이다. 주로 무기유도, 항법, 측량, 지도제작 등 군용으로 사용하거나, 선박, 비행기, 차량의 항법장치에 전자지도와 함께 사용하여 오던 것이, 1983년 대한항공 007편 사고를 계기로 당시 대통령이었던 레이건이 민간부문에 GPS를 개방할 것을 공표하면서 민간부문으로 확대되어 현재는 사람들이나 차량 등 이동체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주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형사절차에서 GPS장치는 주로 범죄자 또는 범죄를 특정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수사의 목적과 특정 범죄자에 대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전자감시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수사와 관련하여 GPS를 통한 위치추적은 다음의 범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대상자가 피해자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예를 들면 실종자)에는 대상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위치추적을 하게 되지만, 범죄혐의자인 경우에는 대상자를 추적하여 범죄의 증거를 포착할 목적으로 위치추적을 하게 된다.

둘째, 부착하는 대상이 휴대전화, 옷, 신발 등 대상자와 항상 장소적으로 밀접한 경우와 차량 등 일시적으로 이용하거나 장소적으로 대상자로부터 떨어져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셋째, 점유자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이미 GPS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때에 수사기관이 이 GPS장치를 활용하여 위치를 파악하는 경우와 대상자 또는 그 주변에 GPS칩을 부착하여 직접 위치를 파악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위치추적 관련법률

현행법상 개인위치정보는 법률과 그에 근거한 각 통신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의 해당규정에 따라 수집되고 있다. 특히 GPS를 통한 위치정보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함)'에 그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의 유출·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입법되었다. 현행법상 '위치정보'의 의미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말한다(위치정보법 제2조 제1항).

이 법에 따른 개인위치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위치정보제공에 동의한 당사자에게만 제공되지만, 예외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이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요청을 받은 때에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때(위치정보법 제29조)와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에 동의한 때에 제3자에게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소방방재청·소방본부·소방서,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해양경찰서'만이 긴급구조기관에 해당한다. 따라서 경찰의 수사 또는 정보활동에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를 위치정보법에서 찾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보니 현행 수사실무상 GPS장치 위치정보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요청으로 처리하고 있다. 명시적으로 수사를 목적으로 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률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대안으로 선택한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이다.

그러나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위치추적 자료' 또는 '접속지 추적자료'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것이지 같은 규정을 현재 진행중이거나 미래에 일어날 범행과 관련한 위치추적 자료를 요청하는 근거로 삼는 것은 확장해석의 오류를 범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결론

2006년 여야 각당은 성폭력 발생시 즉각 위치정보를 전송하거나, 심장발작이나 재난상황 등으로 응급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위치를 전송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에 GPS장착 의무화를 추진한 바 있고, 2010년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같은 내용을 추진하였으나 아직 시행되지는 않고 있다. 2008년에는 정부차원에서 위치정보법을 개정하여 휴대전화 GPS 탑제의무화를 추진하였으나, 위치정보 보호를 위하여 GPS기능을 원하는대로 개인이 켜거나 끌 수 있게 하는 조치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고, 전국민에 대한 국가감시·통제가 되어 문제라는 주장에 부딪쳐 국회에 계류중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911 긴급통화의 위치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하여 2018년까지 모든 휴대전화에 GPS 탑재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2011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고, 일본은 3G 휴대전화에 대하여 2007년부터 GPS장착을 의무화해오고 있다. 긴급구조를 위하여 휴대전화에 GPS장착을 의무화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얼마전에 발생한 '수원사건'과 같이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이 생명·신체에 대한 급박한 침해로부터 피해자를 구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조회의 필요성이 크게 강조될 수 밖에 없으며, '사생팬 사건'에서 시사하는 것처럼 한편으로는 오·남용을 막기 위한 강력한 규제책도 필요하다.

GPS장치를 통하여 얻은 위치정보는 분명 수사기관이 범죄혐의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범행을 저지하며 나아가 범죄를 예방하는데 효율적인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수사기관에서 행하는 위치추적은 앞으로 IT 기술이 발전해 가면서 그에 따른 방법도 다양화될 수 있는데, 법제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하루빨리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112 위치추적에 관한 위치정보보호법이 합리적으로 개정되기를 바란다. PSI

■ 치안현장탐구

검찰사건 피의자 호송인치에 관하여

이 정 철 경정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협의조정2계장

들어가며

호송인치 문제는 그동안 경·검 양 기관 간의 대표적인 갈등 사항이었다. 검찰 사건 피의자 호송인치를 경찰이 대신하는 시스템에 대하여, 경찰은 심부름을 지휘하는 것과 다름 없는 대표적인 업무전가 행위이자 특권의식의 산물이라며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명문 규정이 없는 호송·인치를 거부한 경찰관을 기소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경찰의 개선 요구를 묵살하였다.

명문규정이 없는데 따른 반발의 여지마저 차단하고 싶었던 것인지, 검찰은 지난 해 대통령령 제정과정에서 검사사건 피의자에 대한 호송인치를 경찰이 전담한다는 내용에 대한 명문화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총리실은 장기적으로 검찰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경찰의 의견에 공감하며, 올해 6월말까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도록 조정하였다.

이 문제는 지난 3월 28일 열린 제1차 경검간 수사협의회에서도 주요 논제로 선정되었고, 각 기관의 기본입장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 교환이 이루졌다. 하지만 아직까지 검찰은 인력·예산 부족을 이유로 들며 현행유지를 주장하는 등 협의에 소극적이다.

이에 경찰청은 조속한 MOU 체결을 위한 협의를 촉구하며, 만약 총리실 권고기한인 6월말까지 양해각서가 체결되지 않으면 검찰사건 피의자에 대한 호송인치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대검찰청에 발송한 바 있다.

이하에서는 호송인치의 각 유형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인력예산이 부족하다는 검찰 주장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검찰사건 피의자 호송인치 유형별 검토

① 검사 사건 체포·구속 피의자의 유치장 호송·검사실 인치

검찰은 경찰이 광범위한 조직과 인력 등을 통하여 범인검거 및 호송 등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검사가 수사하는 피의자를 인근 경찰서 유치장 및 검사실로 호송·인치 지휘하는 것은 '데리고 가서 데리고 오라'는 식의 업무전가와 다를 바 없다.

또한 주·야간을 불문하고 전화 등 비공식적 방법으로 호송·인치 지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강력사건 수사 등 경찰 본연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 무엇보다 호송은 단순한 신병의 이동에 불과한 행정영역으로 지휘의 대상인 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검찰이 직접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

검찰은 판례가 호송인치를 경찰의 업무로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이 관련 판례로 인용하고 있는 장신중 판결 사건은 개정 전 형소법 제196조와 검찰청법 제53조에 근거한 것이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판단할 경우 결론이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다.

② 지명수배한 피의자 체포시 호송·인치

검찰은 신원확인, 신병검거 및 호송 업무는 본질적으로 경찰의 업무라고 한다. 또한 형소법(제81조, 제200조의6)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체포·구속영장을 집행(인치장소까지 호송)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체포·구속영장에 '인치할 장소'로 검사실이 명기되고 검사가 경찰관에게 영장·형집행장 집행지휘를 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형사절차상 호송은 해당 절차를 수행하는 기관의 업무이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절차에서 필요한 호송은 당연히 검찰의 업무이고, 영장 집행 의무는 경찰관 뿐만 아니라, 검찰청 소속 사법경찰관도 해당되므로 검찰수사관을 활용하여 호송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형소법에도 영장에 인치할 장소를 검사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없으며, 인치장소는 합리적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정할 사안이다.

인치 장소를 특정 장소로만 제한하면 수배자가 원거리에서 검거될 경우 이를 준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영장의 법적 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1998년부터 경찰청에서는 영장신청시 인치·구금 장소를 '경찰서(신청관서)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로 기재하고 있다.

벌금수배자는 검거시 인근 지검에 인계하고 있음에도 체포·구속영장 수배자의 경우만 다르게 취급할 이유도 없다. 검찰수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호송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 및 책임은 경찰이 부담하고, 경찰본연의 업무 수행마저 지장을 초래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③ 경찰사건 구속영장 신청시 검사 면전 피의자 인치 / 긴급체포 승인을 위한 검사면전 피의자 인치

검찰은 형사소송법이 검사가 체포 및 구속 전후를 불문하고 피의자를 심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해 일반적 수사지휘권에 의하여 피의자의 인치를 지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심문은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이고 강제력이 없다. 검찰은 포괄적 수사지휘권에 따라 인치지휘를 할 수 있다고 하나, 피의자에게 별도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구체적 근거가 필요하다.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긴급체포 승인 전 피의자 대면 조사는 구금장소의 임의 변경과 신속한 법관 대면 지연을 초래하므로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상당하다.

따라서 이 경우의 피의자 인치는 판례에서 인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즉 경찰 수사의 적법성이 의심될만한 객관적 사유가 존재하고 피의자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이 구속 송치한 사건 피의자 호송

검찰은 피의자 호송업무는 법령(수형자 등 호송규칙)에 경찰의 직무로 명시되어 있다며, 직무성격에 비추어 보아도 경찰이 구속하여 검찰에 송치한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최초 신문이 종료된 후 구치소까지의 호송은 당연히 경찰이 담당해야 할 업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찰이 구속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한 후에는 검찰이 관리하도록 개선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호송출장소·대용감방에 근무하는 경찰관을 '하인 부리듯' 지휘하는 사례가 빈번한 점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또한 검찰 업무임에도 호송시 경찰차량 사용 및 주유비용 모두 경찰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는 문제점도 고쳐져야 할 것이다.

⑤ 검사 사건 피의자 등 감정유치 및 치료감호 호송

현재 교도소·구치소 수감 중인 경찰·검찰 피의자·피고인을 감정유치 또는 치료감호할 경우, 검찰은 관할경찰서에 호송과 감호를 지시하고 있다. 그 근거로는 형사소송법상 감정유치시 법원이 사법경찰관리에게 감호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제172조가 검사의 감정유치 장 청구에 준용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

검찰청에도 사법경찰관리들이 있고, 그들을 활용해서도 얼마든지 감정유치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검찰 내부 준칙인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관할경찰서장을 지휘 대상으로 규정하여 검찰청 소속 사법경찰관리 활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72조 제7항에 따라 감정유치에 준용되는 구속 관련 규정인 제81조(③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이 집행한다.)에 따르는 경우, 수감 중인 피의자의 감정유치 집행 주체는 교도관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따라서, 수감 중인 피의자에 대한 감정유치 집행(호송·감호 포함)은 교도관이 집행하는 것이 법령상 타당하다고 본다.

마치며

우리나라 검찰은 한 가지만 가져도 막강한 권한을 3가지나 가지고 있다. 검찰이 설립된 본래의 취지인 기소권에 더하여,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수사인력을 활용한 수사권, 역시 세계에서 가장 종속적인 경·검관계에 바탕한 수사지휘권이 바로 그것이다.

과도한 권한을 독점하는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청은 지난 해 경찰의 수사주체성을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주체성이 우리 수사 현실에서 완전하게 인정받고 있다고 보기는 아직 어렵다. 수십년 동안 다져진 검찰 독점적 구조와 고정관념이 아직도 견고하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검사 사건의 호송·인치는 일선 경찰관들이 가장 쉽게, 자주 체감하는 문제점이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경찰청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물론 누군가의 기득권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수형자등호송규칙 등 현행 법령의 근본적 개정도 병행되어야 하기에, 갈 길은 멀고 험하기만 하다.

그러나 호송·인치 업무가 제 주인에게 돌아가야 하는 이유는 확실하다. 일선 경찰관들이 타 기관 업무를 대신하는 부담을 덜고 본연의 업무인 치안활동에 매진할 수 있다면, 국민들도 경찰의 편이 되어 줄 것이다.

결국 호송·인치 문제를 해결하는 동력은 멀리 있지 않다. 묵묵히 제 자리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관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어떤 법령이나 논거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6월 말 MOU 체결에 일선 경찰관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한다. PSI

■ 국내외 입법 및 판례 동향

2012. 3.~4. 입법 및 판례 소개

국내 주요 입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제23657호, 2012. 3. 16. 일부개정

– 시행: 2012. 3. 16.

– 주요내용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의 발견을 위한 조치 등 신설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수사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조치 신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조사 및 가해자와의 대질신문 최소화, 긴급하지 않은 수사에서 피해자의 학습권 보장, 피해자전담조사를 성폭력범죄 수사 전문교육 등을 받은 수사인력이 하도록 함

· 법률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등의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 및 절차 등을 정함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제23659호, 2012. 3. 13. 일부개정

– 시행: 2012. 3. 13.

– 주요내용

·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을 협박하거나 보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도록 하는 등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검찰사건사무규칙'

– 법무부령 제766호, 2012. 3. 15. 일부개정

– 시행: 2012. 3. 15.

– 주요내용

·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가 진정 또는 탄원의 형식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고소 또는 고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소사건 또는 고발사건으로 수리할 수 있음

· 내사사건의 수리사유를 출판물의 기사, 첩보의 입수 등으로 범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로 한정함

· '수사사건' 제도를 신설함

● '경범죄 처벌법'

– 법률 제11401호, 2012. 3. 21. 전부개정

– 시행: 2012. 3. 22.

– 주요내용

· 시대변화에 따라 가벌성이 감소한 조항(전당품 장부 허위기재, 비밀춤교습 및 장소제공 등) 및 다른 법률로 규제가 가능한 처벌조항(금연장소 흡연, 정신병자 감호소홀 등) 삭제, 규제필요성이 제기되거나 처벌범위의 확대가 요구되는 조항(지속적 괴롭힘, 광고물 무단부착, 허위 인적사항 사용 등)을 신설, 수정·보완함.

· 관공서에서 술에 취하여 주정한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함

· 경제적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출판물의 부당게재 등, 거짓광고, 업무방해, 암표매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국내 주요 판결

● 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0헌마89 결정

[형법 제328조제1항 위헌소원]

– 사건의 개요

· 청구인 갑: 자신의 이복남매 친족인 피해자 A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갑의 모친 B 소유의 양도성 예금증서를 절취한 사실로 기소됨.

· 갑은 위 재판 계속 중 형법 제344조에 의하여 형법 제329조 절도죄에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친족상도례 규정은 피해재물 소유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석하거나, 절도죄에 있어서 피해재물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형법 제328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해 범인과 소유자 외에 점유자에게까지 친족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2010. 2.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결정요지(합헌: 4인 반대, 1인 별개의견)

· 절도죄는 점유자의 점유를 침탈함으로써 재물의 소유자를 해하는 범죄이고, 절취행위로 인하여 피해재물 소유자뿐만 아니라 점유자도 피해를 입게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절도죄에 있어서 피해재물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범인과 소유자 및 점유자 쌍방 간에 모두 친족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구체화된 형법 제328조제1항은 피해재물의 소유자와만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과 소유자 및 점유자 모두와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 간을 법률상 달리 취급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

● 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1헌마48 결정

[형법 제319조제2항 위헌소원]

– 사건의 개요

· 청구인 갑: 2009. 4. 10. 청구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갔다가, 청구인의 아버지 및 사무실 직원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음.

· 청구인은 그 항소심 계속 중 퇴거불응죄를 규정한 형법 제319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 2010. 11. 23. 기각되자 2010. 12. 17.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고, 2011. 3.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결정요지(합헌: 전원일치)

·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9조 제2항은 헌법 제12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및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도15057 전원합의체 판결

[강간상해, 강도상해, 상해, 부착명령(병합)]

– 판결요지[다수의견]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는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중의 하나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 규정 전단은 그 문언상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사실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됨

·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이하 '소년보호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을 고려할 것이 아님

●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도9821 판결
[도로교통법 위반]

– 판결요지

· 교통섬이 설치되고 그 오른쪽으로 직진 차로에서 분리된 우회전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인 우회전차로를 따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고, 우회전차로가 아닌 직진 차로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방법으로 우회전하는 행위는 구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의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에 해당함

●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도961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 판결요지

·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함

·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함

●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공무원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 판결요지[다수의견, 국가공무원법 위반 부분]

· 공무원인 교원이 집단적으로 행한 의사표현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이나 공직선거법 등 개별 법률에서 공무원에 대하여 금지하는 특정의 정치적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나,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행위 등과 같이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그 행위는 공무원인 교원으로서의 본분을 벗어나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서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어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한 것임

· 이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봄

최신 외국 입법(영국)

● Domestic Violence, Crime and Victims (Amendment) Act 2012
– 2012. 3. 8. 통과(2012년 제4호)
– 주요내용

· 2004년 법 제5조의 처벌범위: 아동 또는 취약성인이 사망에 이르거나 이를 수 있는 때

· 개정후: 중대한 신체적 손상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제5조의 처벌범위를 확장함

* 관련사이트: 대한민국법률정보(http://www.law.go.kr), 대법원 판례속보(http://www.scourt.go.kr), 헌법재판소(http://www.ccourt.go.kr), 영국의회법률정보(http://www.legislation.gov.uk)
* 법률 및 판례 정리: 김현숙 선임연구관 PSI

한국학중앙연구원 현대한국연구소와 교류협정 체결

치안정책연구소(소장 한광일 경무관)는 2012년 4월 28일 연구소 세미나실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 현대한국연구소(소장 한도현 교수)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현대한국연구소는 "한국문화의 심층연구 및 교육 등을 통하여 한국학을 진흥"하기 위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이다.

이번 협정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학술세미나·토론회 및 연구진의 교류협력, 학술자료·정기간행물·연구실적물 등 학술정보의 교환 등에 있어서 상호협력하기로 하였다.

치안정책연구 제26권 제1호 논문모집 공고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로 2009년 12월 25일 선정된 「치안정책연구」 제26권 제1호 발간을 위한 논문을 공모합니다.

▶ 공모 기간 : 2012. 3. 2(금) ~ 5. 1(화)

▶ 응모 자격 : 국내외 대학 강사이상, 연구소 연구원, 대학원생 및 경찰실무 경력자 등

▶ 논문 분야 : 치안정책, 범죄수사, 생활안전, 사회안정, 교통, 안보대책 등 경찰 관련 분야

※ 자세한 사항은 치안정책연구소 홈페이지(www.psi.go.kr)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구관 동정

◆ **권태형 연구관(정책기획연구실)**은 2012년 4월 6일과 9일에 제166기 경감기본교육과정 교육생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의 이해'란 주제로 강의하였다.

◆ **김현숙 선임연구관(수사구조개혁연구실)**은 3월 30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경찰법학회에서 '수사절차상 수색의 개념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 **유동열 선임연구관(안보대책연구실)**은 4월 5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 또한 4월 17일 육군 제35사단과 4월 20일 육군 제9사단에서 '종북세력의 실체와 대책'이라는 주제로 안보강연을 하였다.

◆ **이상수 선임연구관(정책기획연구실)**은 '12년 3월 경찰청 수사국의 『수사경과제 정책자문단 회의』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지역치안협의회 성과평가 워크숍』에 참석하여 토론하였다. 또한 국토해양인재개발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인천광역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변화와 혁신을 위한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 강의하고, 4월 25일 한국부패학회 춘계 공동학술대회에서 "경찰의 공정선거 구현을 위한 선거수사 운영실태 진단 및 수사역량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공공혁신 전문월간지인 『공공정책』 '12년 4월호에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지역사회의 역할은?"을 게재하였다. PSI

◆ 치안정책연구소 소개

치안정책연구소는 급변하는 시대 흐름 속에서 우리 경찰이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대한민국의 치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생산해 내는 산실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경찰연구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경찰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찰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비전 수립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연구진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연구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치안관련 최고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최신 국내외 연구자료의 DB(데이터베이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치안정책연구 토대의 확충과 해외 치안정책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등에도 힘을 기울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치안행정 수요에 부응하는 적실성 높은 연구성과 창출로 치안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명실상부한 한국경찰의 싱크탱크(Think Tank)로서 치안정책분야의 세계 최고 연구기관으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 PSI

◆ 치안정책연구소 부서별 업무

부 서	담 당 업 무
정책기획 연구실	• 중·장기 치안수요 예측 및 대응방안 수립 • 기획·정책개발·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 감사·정보통신·홍보 분야 등에 관한 연구 • 총무행정·보수·후생복지 등에 관한 연구
사회안정 대책 연구실	• 국내 정보활동 및 국내 사회안정 대책 연구 • 경찰 경비활동 및 대테러 대책 연구
안보대책 연구실	• 통일을 대비한 치안분야의 연구 • 남북교류 및 북한이탈주민 관리방안 연구 •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연구·분석 •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 및 발전방안 연구
생활안전 대책 연구실	• 범죄예방 및 소년·여성범죄에 관한 연구 • 경찰외근, 민간경비 업무 등 중·장기 생활안전 대책 연구
교통대책 연구실	• 경찰교통의 중·장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교통업무전반의 효율성과 안전성 제고를 위한 연구
범죄수사 연구실	• 경찰수사의 중·장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범죄분석 및 범죄수사에 관한 연구
수사구조 개혁연구실	• 중·장기 수사구조개혁 방안에 관한 연구 • 수사경찰제도 및 수사절차 개선에 관한 연구 • 형사사법제도 개혁에 관한 연구
운영계	• 문서, 보안, 인사 등에 관한 사항 • 회계, 청사유지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소 홈페이지 및 자료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연구소내 서무와 다른 연구실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 연구소 중·장기 발전계획 및 홍보업무 • 연구계획 수립·관리 및 세미나 개최에 관한 사항 • 간행물의 인쇄·배포에 관한 사항 •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등 섭외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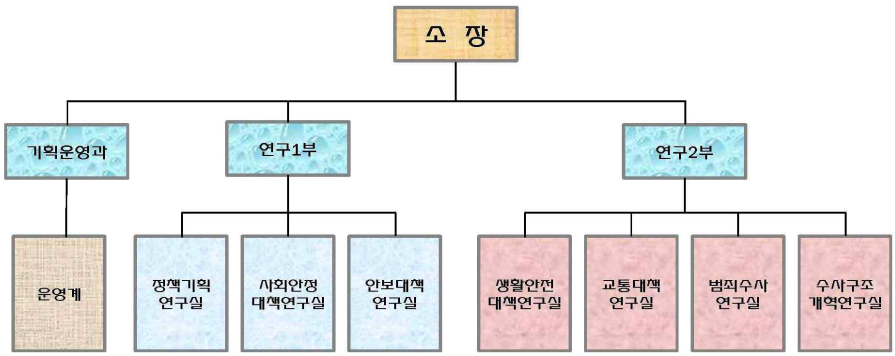
치안정책연구소 조직도